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예방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00명(6급 135명, 7급 135명, 8급 30명)을 증원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대통령령 제 호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7,088”을 “7,388”로, 일반직 계 “7,087”을 “7,387”로, 3급 또는 4급 이하 “7,054”를 “7,354”로 한다.

별표 4 제2호나목에 10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) 산업안전감독(지방고용노동관서)	300명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3]

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39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7,088</u>	<u>7,388</u>	+300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7,087</u>	<u>7,387</u>	+300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7,054</u>	<u>7,354</u>	+300
·	·	·	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2